

2006년 임금동향과 2007년 임금전망

강 승 복*

I. 2006년 임금동향

1. 2006년 임금상승폭, 전년인 2005년보다 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542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05년 임금상승률인 6.6%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한편, 노동부 자료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1~4인 규모를 포함한 전규모,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6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1,656천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승률은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3.9%로 나타났다.

2006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 상승률은 6.7%로 나타났고, 초과급여 상승률은 5.4%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 3.3%포인트 하락하였다. 초과급여의 비교적 저조한 상승률은 초과근로시간이 2.8%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초과근로시간의 감소는 근로시간 단축사업장의 확대, 경기둔화로 인한 초과근무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별급여는 전년에 비해 2.4% 상승하여 전년의 상승률 3.5%에 비해 1.1%포인트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표 1 참조).

노동부의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6년에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5년의 3.6%에 비해 0.3%포인트 하락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천 원/월, 시간/주, %)

		2002	2003	2004	2005	2006
노동부	임금총액	1,948 (11.2)	2,127 (9.2)	2,255 (6.0)	2,404 (6.6)	2,542 (5.7)
	정액급여	1,408 (12.1)	1,532 (8.8)	1,636 (6.8)	1,756 (7.4)	1,874 (6.7)
	초과급여	126 (-3.9)	135 (7.3)	137 (1.7)	149 (8.7)	158 (5.4)
	특별급여	416 (13.4)	460 (11.4)	482 (4.6)	499 (3.5)	511 (2.4)
	총근로시간(주)	46.0 (-1.4)	45.6 (-0.7)	45.4 (-0.5)	44.9 (-1.1)	44.0 (-2.0)
	정상근로시간(주)	41.8 (-0.3)	41.6 (-0.5)	41.6 (-0.1)	40.9 (-1.7)	40.1 (-1.9)
	초과근로시간(주)	4.1 (-11.8)	4.1 (-2.2)	3.8 (-5.1)	4.1 (5.4)	3.9 (-2.8)
통계청	임금총액	1,325 (-)	1,466 (10.7)	1,542 (5.2)	1,593 (3.3)	1,656 (3.9)

주: 1) 노동부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전체근로자가 대상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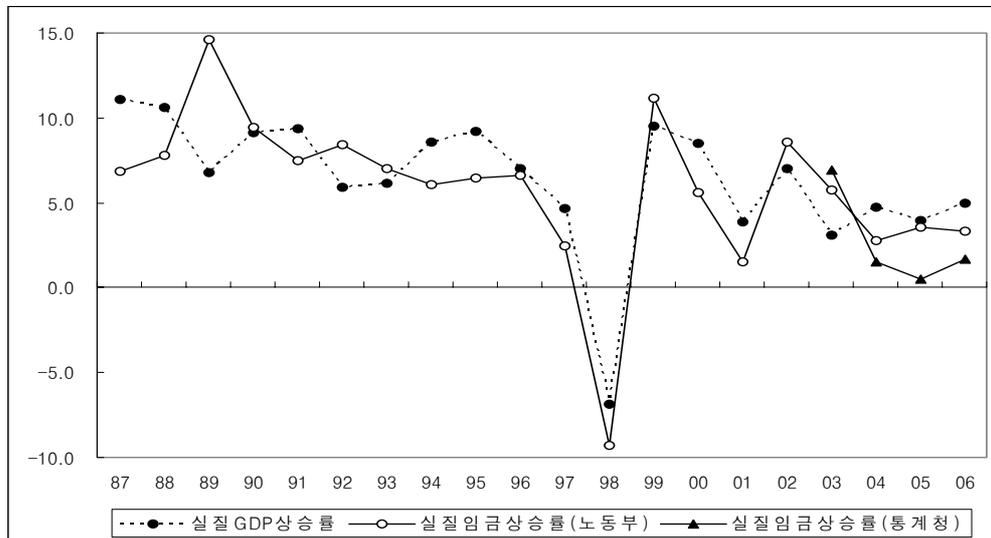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 것이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실질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면 2006년도에 1.7%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년도의 0.5%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그림 1〕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낮은 임금상승률 기록

산업별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하여 통신업, 기타 서비스업에서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2〉 산업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2,127 (9.2)	2,255 (6.0)	2,404 (6.6)	2,542 (5.7)
제조업	2,018 (8.7)	2,209 (9.5)	2,388 (8.1)	2,523 (5.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689 (13.8)	3,838 (5.2)	4,101 (6.9)	4,307 (5.0)
건설업	2,072 (11.5)	2,130 (2.8)	2,123 (-0.3)	2,319 (9.2)
도·소매업	2,089 (10.6)	2,175 (4.1)	2,408 (10.7)	2,543 (5.6)
숙박 및 음식점업	1,439 (5.4)	1,513 (5.1)	1,600 (5.8)	1,615 (0.9)
운수업	1,836 (11.1)	1,926 (4.9)	2,111 (9.6)	2,182 (3.3)
통신업	3,585 (3.6)	3,642 (1.6)	3,698 (1.6)	3,752 (1.5)
금융 및 보험업	3,310 (12.6)	3,539 (6.9)	3,748 (5.9)	4,077 (8.8)
부동산 및 임대업	1,350 (9.4)	1,387 (2.7)	1,520 (9.6)	1,662 (9.3)
사업서비스업	2,046 (5.2)	2,185 (6.8)	2,291 (4.9)	2,465 (7.6)
교육서비스업	2,560 (7.0)	2,696 (5.3)	2,724 (1.0)	2,875 (5.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53 (7.1)	2,059 (5.4)	2,259 (9.7)	2,461 (8.9)
오락·문화·운동서비스	2,574 (13.2)	2,690 (4.5)	2,724 (1.2)	2,803 (2.9)
기타 서비스업	1,861 (8.6)	1,932 (3.8)	2,010 (4.1)	2,036 (1.3)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 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지속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5~9인, 30~99인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에 이어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30~9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6.8%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3.4%의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2006년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 상승률 6.9%, 초과급여 상승률 2.8%, 특별급여 상승률은 -3.1%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2006년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 현상은 주5일근무제 확산과 이에 따른 초과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초과급여 상승률 둔화, 경기둔화로 인한 특별급여 상승률 둔화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3〉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500인 이상=100.0)

	2004년 평균		2005년 평균		2006년 평균	
	평균	지수	평균	지수	평균	지수
전 규모	2,255 (6.0)	[67.8]	2,404 (6.6)	[67.9]	2,542 (5.7)	[69.4]
5 ~ 9인	1,642 (6.4)	[49.3]	1,783 (8.6)	[50.4]	1,886 (5.8)	[51.5]
10 ~ 29인	1,945 (7.6)	[58.5]	2,081 (7.0)	[58.8]	2,187 (5.1)	[59.7]
30 ~ 99인	2,124 (6.0)	[63.9]	2,259 (6.3)	[63.8]	2,413 (6.8)	[65.9]
100 ~ 299인	2,387 (7.1)	[71.8]	2,517 (5.4)	[71.1]	2,646 (5.1)	[72.3]
300 ~ 499인	2,683 (8.4)	[80.7]	2,822 (5.2)	[79.7]	2,943 (4.3)	[80.4]
500인 이상	3,327 (9.3)	[100.0]	3,541 (6.4)	[100.0]	3,660 (3.4)	[100.0]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안은 5~9인 규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금지수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정규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둔화주세 지속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를 정규,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정규·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02	1,790 (-)	968 (-)	977 (-)
2003	2,016 (12.6)	1,055 (9.0)	1,028 (5.3)
2004	2,118 (5.0)	1,092 (3.5)	1,152 (12.0)
2005	2,199 (3.8)	1,108 (1.5)	1,156 (0.4)
2006	2,270 (3.2)	1,171 (5.6)	1,198 (3.6)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2006년의 경우 정규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3.2%로 나타났는데, 상승폭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 정규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은 2006년 들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의 2006년 임금상승률은 전년인 2005년의 0.4%보다 높은 3.6%로 나타났다.

5.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전년보다 낮은 제시율과 요구율 발표

2007년도 경영계 임금제시율과 노동계 요구율은 모두 전년도보다 낮은 수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7년에 예상되는 경기둔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9.3%, 비정규직은 18.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9.0%, 비정규직은 19.5%를 요구하였다. 반면, 한국경총은 적정임금인상률로 2.4% 인상을 제시하는 한편, 대졸 초임과 고임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동결을 권고하였다.

〈표 5〉 경총의 제시안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한국노총	민주노총	
1997	0.0	11.2	10.6	7.0
1998	-25.0	4.7	7.2	-2.5
1999	0.0	5.5	7.7	12.1
2000	5.4	13.2	15.2	8.0
2001	3.5	12.0	12.7	5.1
2002	4.1	12.3	12.5	11.2
2003	4.3	11.4	11.1	9.2
2004	3.8	10.7	10.5	6.0
2005	3.9	9.4	9.3	6.6
2006	2.6	9.6	9.1	5.7
2007	2.4	9.3	9.0	-

- 주: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 6)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경총·한국노총·민주노총 및 노동부 발표자료, 각년도.

II. 2007년 적정임금인상률

1.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적정임금인상률 5.7%

임금상승률의 적정성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과의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의 준거지표로서 근로자측은 생계비, 기업측은 지불능력을 주로 강조하고 있지만, 소위 '생산성임금제'가 노사 모두에게 중립적이다.

생산성임금제란 임금상승률을 생산성 증가율과 연계시키는 임금인상 결정방식으로서,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만큼 적정하게 보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에 대해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란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생산성임금제를 경제 전체에 대하여 확대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엄밀하게는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 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

$$\dot{W} = \dot{y} + \dot{P} - \dot{L} \dots\dots\dots (2)$$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적정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begin{aligned} \text{적정임금인상률} &= \text{실질경제성장률(한국은행 4.4\%)} \\ &+ \text{소비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2.6\%)} \\ &- \text{취업자증가율(한국노동연구원 1.3\%)} \\ &= 5.7\% \end{aligned}$$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도출된 평균적 의미의 적정임금인상률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임금교섭에서의 준거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 입각한 적정임금인상률은 경제운용의 준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유용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중립성으로 인해 노사 간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2007년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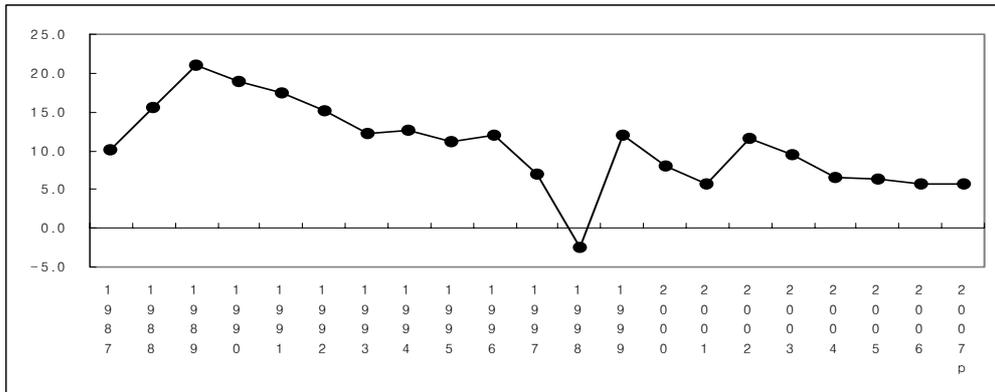
1.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은 5.5%

2007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 과거 연도별 실적치(1987~2006년 자료)를 이용한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임금은 장기적으로 물가격차, 생산성, 실업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추정할 결과 2007년에는 경기둔화와 최근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률 자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6년보다 0.2%포인트 내외로 낮아진 연간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실제 적정임금 인상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은데, 2001년과 2004년, 2006년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적정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나타나며 2007년 임금에 대한 본원의 전망 또한 적정임금 인상률보다 소폭 낮은 명목임금 상승률을 예측하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임금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및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상승률 추정모형」.

이론적으로 국민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적정임금 인상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2000~2006년의 적정임금 인상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평균치는 각각 6.2%와 7.4%로 나타나 통계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적정임금 인상률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범위로 하고 있으나 명목임금 상승률은 노동부에서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상용직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적정임금 인상률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적정임금 인상률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정규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정규 상용직보다 높은 연도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적정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의 <표 4>를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KL**

<표 6> 실제 적정임금 인상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

연도	적정임금 인상률	명목임금 상승률
2000	6.4	8.0
2001	5.9	5.1
2002	6.9	11.2
2003	6.7	9.2
2004	6.4	6.0
2005	5.4	6.6
2006	5.9	5.7
2007p	5.7	5.5

주: 2007년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